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71536]

[www.miller-time.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7.12.18]

[www.lounge105.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12]

[dhkim@cnfrts.com]



정보 공개 서

[(주)씨엔에프알티에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씨엔에프알티에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4 층 1403 호(영등포동 8 가,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6672-1080]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6919-294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펄피맥팀 / 02-6672-1080]

[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9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4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5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3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1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4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8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50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씨엔에프알티에스	펍피맥(PUB P!NC)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4 층 1403 호 (영등포동 8 가,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03.31	2003.04.03	석일선	02-6672-1080	02-6672-1090
	법인등록번호	110111-2749640	사업자등록번호	107-86-33000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석일선	펍피맥(PUB P!NC)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4 층 1403 호(영등포동 8 가,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석일선	02-6672-1080	02-6919-294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낙중	펍피맥(PUB P!NC)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4 층 1403 호(영등포동 8 가,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석일선	02-6672-1080	02-6919-294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김용민	펍피맥(PUB PIMc)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4 층 1403 호(영등포동 8 가,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석일선	02-6672-1080	02-6919-294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3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펍피맥	
상 호	펍피맥 OO 점	해당 지역명 표기
상표(서비스표)		해당없음
상표(서비스표)		해당없음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911,166	202,497	708,669	940,331	-107,739	81,462
2022 년	1,048,090	144,345	903,744	1,150,497	96,159	195,075
2023 년	1,061,429	65,313	996,115	1,268,322	74,597	92,371

2)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와 같습니다..

☞ 상기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석일선	대표이사	2023.09~현재	(주)씨엔에프알티에스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관련 임원	김낙중	이사	2013.03~현재	(주)씨엔에프알티에스 이사	이사
	김용민	감사	2023.10~현재	(주)씨엔에프알티에스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펍피맥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기간	사업내용
	해당없음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펍피맥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사용허락을 부여하는 허락지식재산권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펍피맥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18.05.14	4013577110000	(주)씨엔에프 알티에스	2028.05.14 (2028.05.14)

* 당사의 지적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펍피맥] 가맹사업 시작일

펍피맥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7년 12월 입니다.

2. [펍피맥] 연혁

펍피맥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씨엔에프알티에스	펍피맥 (PUB PI Mc)	석일선	2017.12~2023.09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4층 1403호 (영등포동 8가, 케이엔케이디지털타워)
(주)씨엔에프알티에스	펍피맥 (PUB PI Mc)	석일선	2023.09~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4층 1403호 (영등포동 8가, 케이엔케이디지털타워)

3. [펍피맥] 업종

펍피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펍피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피자&주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펍피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펍피맥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	7	2	9	8	1	12	11	1
서울	7	5	2	7	6	1	9	8	1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	1	0	2	2	0	3	3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1	1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펍피맥] 가맹점 수

펍피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7	0	0	0	0	7
2022년	7	2	1	0	2	8
2023년	8	4	1	0	0	11

6. [펍피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펍피맥]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상호/이름	업종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해당없음			

*올리브 치킨은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펍피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3 년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POS 기준,VAT 미포함)						산출 가맹 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매출액	면적 3.3㎡당	최고 매출액		최저 매출액		
				매출액	면적 3.3㎡당	매출액	면적 3.3㎡당	
전체	11	305,045	10,626	370,684	14,372	223,062	8,543	7
서울	8	305,045	10,626	370,684	14,372	223,062	8,543	7
부산	0	해당없음(5곳미만)						0
대구	0	해당없음(5곳미만)						0
인천	0	해당없음(5곳미만)						0
광주	0	해당없음(5곳미만)						0
대전	0	해당없음(5곳미만)						0
울산	0	해당없음(5곳미만)						0
세종	0	해당없음(5곳미만)						0
경기	3	해당없음(5곳미만)						0
강원	0	해당없음(5곳미만)						0
충북	0	해당없음(5곳미만)						0
충남	0	해당없음(5곳미만)						0
전북	0	해당없음(5곳미만)						0
전남	0	해당없음(5곳미만)						0

경북	0	해당없음(5 곳미만)	0
경남	0	해당없음(5 곳미만)	0
제주	0	해당없음(5 곳미만)	0

* 상기 자료는 po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 6 개월(180 일)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쿨, 레시피 준수 정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1개	95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펍피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단	내 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단위:천원)
광고비	광고	01.01~12.31	0
판촉비	판촉	01.01~12.31	741
합계			741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e-비즈니스사업단	서울시 중구 회현동 1 가 203 번지	02-2002-5636

*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펍피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가. 최초 가맹금

귀하(양수인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 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매뉴얼 포함)	7,7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점주1인 및 기타인원1인)	3,300,000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해당없음)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2,000,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 VAT 포함)
합계	13,000,000
가맹비	7,700,000
교육비	3,300,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펍피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3 ~ 별첨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면적 66㎡ (20py)]

품목	금액(단위: 원, VAT 포함)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약 40,700,000	약2,035,000	가맹	

간판 및 사인물	약 17,380,000	약869,000	계약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주방기기	약 13,750,000	약687,500		
주방식기 및 집기	약 1,650,000	약82,500		
초도물품	약 4,400,000	약220,000		
합계	약 77,880,000	약3,894,000	-	
검수비 (가맹점 설비 직접 시행할 경우)	3.3m ² 당 330,00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면적 3.3 ㎡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별도품목: 냉난방기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 원, VAT 포함)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계약금)	13,000,000	계약 체결 시
착수금	기타 본사 지급 금액의 30%	공사착공시
중도금	기타 본사 지급 금액의 40%	착공후 15일 후
잔금	기타 본사 지급 금액의 30%	공사완료시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	---------------------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펍피맥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별도 규정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별도 규정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2]과 같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 원, 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본부	총 매출액의 2%	매월 10일	후불로 반환 안됨
개정 이후 교육비	수시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교육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단 조리 교육의 경우 1회 당 550,000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본부	광고의 성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	가맹본부, 협력업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청구	VII-1 참조
지연이자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	개별 청구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하는 중에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 수집,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2p]에 나와 있습니다.

라. 경업금지 기간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펌피맥과 같거나 비슷한 업종(타사 가맹점 및 독립점포)을 경영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펌피맥과 같거나 비슷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마.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바.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펍피맥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펍피맥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3)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 4) 계약 종결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반환 청구 할 수 없지만 당사와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6) 영업비밀(매뉴얼, 계약서, 전산 자료, 홍보 등) 보호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당사의 [펍피맥]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품목의 세부 내용들은(원부재료의 품목 및 제조사 포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해당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이며, 일부 품목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 공급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공급가격의 상·하한 기재시,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에 공급한 내역이 없거나, 공급가격의 상·하한 산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급가격 상·하한의 품목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총 143개의 품목 중 72개의 품목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펍피맥]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년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당사의 [펍피맥]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년도에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당사가 당사의 [펍피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년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펍피맥]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용역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2의 초도물품과 이를 원부재료로 당사가 제공한 레시피에 의하여 조리한 상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 서면 경고 2 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이상 위반 : 물품공급 중단 후 가맹계약 해지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펍피맥]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타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공급 및 판매 금지	1 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 회 이상 위반 : 물품공급의 중단 후 가맹계약 해지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권장가격을 온·오프라인(매장담당자, 홈페이지, 공문 등)을 모두 활용하여 공지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자와 맥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외식업종	펍피맥	해당 없음

*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어느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속하지 않고 가맹점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을 “미 개설지역”이라 하며 “미 개설지역”에 대한 편입·분할 등 모든 조정권한은 당사에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400m(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별도 책정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 시에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 개설지역”에 대한 편입·분할, 신규 가맹점 개설은 당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구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 - 계약서와 규정내에서 홍보 및 영업활동이 가능함 	1 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 회 위반 : 물품공급의 중단 후 가맹계약 예고 3 회 위반 : 가맹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들간 영업구역 침범행위는 당사자들의 이해와 합의를 우선시하며 당사의 개입을 최소화 함을 원칙으로 함 - 영업구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민사적인 해결에 앞서 당사 규정에 입각한 제재요청을 받은 경우

* 당사는 영업구역의 침해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민사적인 해결을 희망하거나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하였을 경우 당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영업구역의 침해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민사적인 해결이 아닌 계약서에 정해진 제재를 희망할 경우 위 표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펍피맥 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침해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재계약(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72.96	27.04	0	0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가. 가맹계약기간

펍피맥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입니다.

나.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 기간은 [1] 년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계약 갱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 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A.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3항 1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7조 3항 2호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 3항 3호 가목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 3항 3호 나목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 3항 3호 다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조 3항 3호 라목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후 관계 당국의 권고나 영업방침의 변경에 따라 본계약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그 수정된 가맹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조 3항 4호
갱신 당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및 비품이 펍피맥 가맹점의 통일성 및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7조 3항 5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본부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조 3항 6호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계약의 해지) 제1항 및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 해지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조 4항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계약의 해지) 제3항 및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즉시 해지되지 않은 경우 즉시 해지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조 5항

B.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25 조 각호 및 31 조 1 항 1 호
가맹점사업자가 제 15 조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 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 경우	17 조 1 항 및 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로 하여금 경업 또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정거래처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 조 1 항 ~ 4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지정거래처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 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 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7 조 2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부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 조 2~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 조 21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 ii.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iii.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iv.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v. 그 밖에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C.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 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가맹본부 (02-6672-1080)

- * 가맹본부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양수가맹비 (₩3,850,000)(부가세포함)와 교육비(₩3,300,000 원)(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 원)(부가세해당없음)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양수인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	----	---------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 검토 → 승인여부통지 → 가맹계약체결 → 상 속완료	교육수료
대리행사	불가	-		
업무위탁	불가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 및 겸업금지 범위

가. 경업 및 겸업금지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펍피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펍피맥]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피자류와 맥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6672-1080)

* 동일한 업종의 영업이라 함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경우 당사는 당사의 가맹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물품공급중단,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펍피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7:00 ~ 익일 02:00	5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음	문의: 가맹본부 (02-6672-108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일수(휴무일수)는 가맹점수익과 직결되므로 연중무휴를 권장합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권장 근무 인력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66m ² 이상 (20py)	2인 이상	직접 또는 교육이수자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교육이수자	
99.174m ² 이상 (30py)	4인 이상			
165.289m ² 이상 (50py)	6인 이상			
231.404m ² 이상 (70py)	7인 이상			
330.578m ² 이상 (100py)	8인 이상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부서
Bar(바)	라인관리 및 세척	담당자 매장 방문 → 확인 (바, 홀, 주방) → 가맹점방	1회 이상 / 1개월	당사 S/V 및 영업관리팀
	타맥주판매여부			

	타주류판매여부	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 업자 확인 및 서명 → 완 료		
	기자재관리상태			
	Keg 보관상태			
	불량keg확인 (3개월치수량체크)			
Hall(홀)	직원복장상태			
	규정소품확인			
	매장행사여부			
Kitchen(주방)	규정OEM제품확인			
	사용제품유통기한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방문 기록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가 보관하게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유지기록하고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과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유지하고 당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i.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 비용은 광고 실시 2주 전 가맹본부의 통보에 따라 광고 실시 1주전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광고 계획 공고 → 가 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대중매체

			비율 따라 산정 하되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집계한 원·부자재의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해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가맹점 단독광고	없음	전액부담		
개별 행사	판촉	기획 비용	제작 비용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 행사

- ii.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공동의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물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제작 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제 17 조)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가맹계약서 제33조)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 경업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품중 가맹본사가 인정한 품목 이외 자점매입을 한 경우 위약별로 금오백만(₩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펍피맥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위약별로 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이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 일 삼십만원(₩300,000 원)씩 지불하여야 한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한다.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6672-1080).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즉시	-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즉시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 사항 검토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
가맹 계약 및 가맹금 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보관 -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 일 후	13,000,000 (VAT 포함)

	(가맹금 예치에 대한 안내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교부)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5일	-
도면 및 견적서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및 견적서 확인	3일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30일	착공 시 착수금(30%) / 착공 후 15일 중도금(40%) /공사 완료시 잔금(30%)
기타 물품 입고	- 기타 물품 입고	2 일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7일	최초 예치
오픈	- 오픈 리허설 - 오픈 행사	즉시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귀하는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다.예치 가맹금의 범위]에 기재된 가맹금을 당사에서 교부하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8. 가맹금 예치기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p>지장을 주는 경우</p>			<p>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p> <p><분할지급시 절차></p> <p>○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p> <p>(1 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 일간	100 만원 한도	
테스터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공급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신제품 출시 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 점의 경영상 발생하 는 문제에 대한 분 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펍피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자금 지원	㈜씨엔에프알티에스	최대 5 천만원	담보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펍피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담당	교육 내용	소요 시간	담당자	피교육자	장소
신규 교육	관리팀	펍피맥 서비스 매뉴얼 (이론)	2시간	OPEN 가맹점 담당자	가맹점주 및 종업원	직영점
	관리팀	펍피맥 맥주 매뉴얼 (이론)	2시간	교육담당자	상동	본사
	메뉴팀	펍피맥 개별안주조리 (실습)	3시간	OPEN 가맹점 담당자	상동	본사
	관리팀	펍피맥 생맥주관리 (실습)	3시간	교육담당자	상동	본사
	관리팀	고객응대요령, Bar관리 (현장 실습)	최소 일평균 6시간 (5일간)	OPEN 가맹점 담당자	상동	직영점
	메뉴팀	주방 조리 (현장 실습)	최소 일평균 6시간 (5일간)	직영점 조리교육 실장	상동	직영점
보수 교육	관리팀 메뉴팀	주방 조리 고객 서비스 생맥주 / Bar 관리	개별실습교육	OPEN 가맹점 담당자 교육담당자	상동	해당 가맹점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원 VAT포함)	피교육자	비고
----	------	-----------------	------	----

신규 교육	7일	3,300,000	가맹점주 및 종업원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영업중의 부담 참조	기본 교육 무료 기타 교육 비용 발생	상동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펍피맥 용산점	서울 용산구 한강로 2 가 143-3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112 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19,164	POS 기준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펍피맥팀(02-6672-108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2023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2022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 내용은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별첨 3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해당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2022년의 공급 가격이며, 일부 품목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 공급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공급가격의 상·하한 기재시, 2022년에 가맹점에 공급한 내역이 없거나 공급가격의 상·하한 산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급가격 상하한의 품목리스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는 총 66개의 품목 중 33개의 품목을 기재하였습니다.